

# 복지협약에 관한 약정서

연전개발(주)호텔제이스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와 대구대학교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지정 복지호텔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아래와 같이 지정 복지호텔 협약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대상자)

1. “을”의 소속 교직원 및 동석자를 대상으로 하며, “을”의 “갑” 이용 시 학교 교직원이 계약 및 동석을 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2. 동창회는 총동창회, 과별동창회, 동기회 모임에 한하여 동일 적용된다.
3. 단, “을”의 졸업 동문은 약정서에서 제외된다.

## 제3조(협력내역)

1. 제2조의 대상자가 “갑”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감면혜택을 적용한다.
  - 1) 본관연회장 : 10% 할인 - 그랜드볼룸, 다이아몬드, 사파이어, 에메랄드, 루비
  - 2) 신관연회장 : 주말 10%할인(주중은 할인된 가격임)  
- 무궁화, 국화, 백합, 장미, 코스모스, 목련
  - 3) 부대업장 : 10% 할인 - 애플하우스(양식당), 자미정(한식당),  
서울각두기(곰탕전문점)  
야네단(야끼도리전문점)  
제이스골프(스크린골프 - 이용요금 및 식사)
  - 4) 예식 : ₩1,000/인당 할인
  - 5) 객실 : 숙박 시 45% 할인 적용 - 스텐다드(₩88,000), 스텐다드 조식패키지(₩95,000)  
※ 단, 음주류는 제외하며 기타 일반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.
2. “을”은 교내 게시판을 활용한 성의 있는 홍보를 통하여 교직원들이 “갑”을 이용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“갑”은 “을”의 소속 대학생들이 “갑”의 호텔에서 인턴십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.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약하여 정한다.
3.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기간 및 효력)

1. 본 약정서의 효력은 약정일로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상호 해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 매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2. 본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.
3. 협약 당사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4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언제든지 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5조(기타)

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9년 9월 1일

“갑” 연전개발(주)호텔제이스  
대표이사 전용사



“을” 대구 대학  
총장 이 용 부

